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5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5. 11.  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#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가.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게 대행하고 있음

나. 2013. 1월 이후 물가 등 인상요인이 미 반영된 수수료로 인해 분뇨 수집·운반업자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,

다. 2015. 7월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, 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 처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여, 분뇨 수집·운반 대행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코자 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함 (안 제7조 별표1)

- 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(안)

구분	수수료(원)		비 고
	현재	인상	
기본요금(0.75m <sup>3</sup> 까지)	11,720	13,380	市 처리시설 유입 처리 수수료 포함(10ℓ 당 10원)
초과요금(0.1m <sup>3</sup> 마다)	1,140	1,250	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 제4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4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5. 9. 30. ~ 10. 20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생략(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노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분노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 1】

**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**  
(제7조제1항 관련)

구분	수수료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12,630원	750원	13,380원
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1,150원	100원	1,250원

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포함) 수수료를 말함

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처리수수료를 말함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【별표 1】</b>  <b>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</b> (제7조제1항 관련)	<b>【별표 1】</b>  <b>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</b> (제7조제1항 관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기준</th> <th colspan="3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>수집·운반</th> <th>처 리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요금 (0.75m<sup>3</sup>까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,970원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1,720원</u></td> </tr> <tr> <td>초과요금 (매0.1m<sup>3</sup>마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040원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40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·운반	처 리	계	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<u>10,970원</u>	750원	<u>11,720원</u>	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<u>1,040원</u>	100원	<u>1,140원</u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기준</th> <th colspan="3">수 수 료</th> </tr> <tr> <th>수집·운반</th> <th>처 리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요금 (0.75m<sup>3</sup>까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2,630원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5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3,380원</u></td> </tr> <tr> <td>초과요금 (매0.1m<sup>3</sup>마다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150원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,250원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기준	수 수 료			수집·운반	처 리	계	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<u>12,630원</u>	750원	<u>13,380원</u>	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<u>1,150원</u>	100원	<u>1,250원</u>
부과기준	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	처 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<u>10,970원</u>	750원	<u>11,72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<u>1,040원</u>	100원	<u>1,14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기준	수 수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집·운반	처 리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본요금 (0.75m <sup>3</sup> 까지)	<u>12,630원</u>	750원	<u>13,38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과요금 (매0.1m <sup>3</sup> 마다)	<u>1,150원</u>	100원	<u>1,250원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 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</p> <p>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</p>	<p>※ 「수집·운반」은 분뇨의 수집·운반 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</p> <p>※ 「처리」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수수료를 말함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**참고 1**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## □ 「하수도법」 제41조

**제41조(분뇨처리 의무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오지·벽지 등 분뇨의 수집·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⑤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